지축역 한림 풀에버 공급안내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07.26. 이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며 민영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9.08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고양시)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주택건설지역(고양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입주자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16.09.08 이전부터 계속거주)에서 일반 공급세대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2017.03.08 이전부터 계속거주)에게 20%를 공급(고양시 공급 신청자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건설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추첨제로 전환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 입주자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조합원 및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자 포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부산 기장군 – 모든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세종시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부산진구 – 민간택지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02. 13. 일부개정]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 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 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7.07.2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택과 – 35934호(2017.09.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B2 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최고 29층, 11개동, 총 1,1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0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일반공급	저층우선 배정세대
민영주택	2017001182–1	72.937A	72A	214	72.937	22.859	95.796	51.585	147.381	52.98	20	20	20	6	66	148	8
	2017001182–2	72.936B	72B	214	72.936	22.567	95.503	51.585	147.088	52.98	20	20	20	6	66	148	8
	2017001182–3	84.982A	84A	337	84.982	25.559	110.541	60.103	170.644	61.73	34	34	34	10	112	225	14
	2017001182–4	84.968B	84B	337	84.968	25.721	110.689	60.093	170.782	61.72	34	34	34	10	112	225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5%) 계약시	2차(10%) 2017.10.27	중도금(60%): 1회(10%) 2018.02.05	2회(10%) 2018.06.05	3회(10%) 2018.10.05	4회(10%) 2019.03.05	5회(10%) 2019.07.05	6회(10%) 2019.11.05	잔금 입주지정일
72A	214	102동 1호, 4호 106동 1호, 4호 107동 1호, 4호 110동 1호, 4호	1층	8	184,175,327	219,224,673	403,400,000	20,17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100,850,000
			2층	8	184,175,327	228,084,673	412,260,000	20,613,000	41,226,000	41,226,000	41,226,000	41,226,000	41,226,000	41,226,000	41,226,000	103,065,000
			3층	8	184,175,327	236,954,673	421,130,000	21,056,000	42,113,000	42,113,000	42,113,000	42,113,000	42,113,000	42,113,000	42,113,000	105,283,000
			4층	8	184,175,327	245,824,673	430,000,000	21,5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07,500,000
			5층	8	184,175,327	254,684,673	438,860,000	21,943,000	43,886,000	43,886,000	43,886,000	43,886,000	43,886,000	43,886,000	43,886,000	109,715,000
			6층 이상	174	184,175,327	259,124,673	443,300,000	22,165,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110,825,000
72B	214	102동 2호, 3호 106동 2호, 3호 107동 2호, 3호 110동 2호, 3호	1층	8	184,175,327	217,974,673	402,150,000	20,107,000	40,215,000	40,215,000	40,215,000	40,215,000	40,215,000	40,215,000	40,215,000	100,538,000
			2층	8	184,175,327	226,814,673	410,990,000	20,549,000	41,099,000	41,099,000	41,099,000	41,099,000	41,099,000	41,099,000	41,099,000	102,748,000
			3층	8	184,175,327	235,654,673	419,830,000	20,991,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41,983,000	104,958,000
			4층	8	184,175,327	244,494,673	428,670,000	21,433,000	42,867,000	42,867,000	42,867,000	42,867,000	42,867,000	42,867,000	42,867,000	107,168,000
			5층	8	184,175,327	253,334,673	437,510,000	21,875,000	43,751,000	43,751,000	43,751,000	43,751,000	43,751,000	43,751,000	43,751,000	109,378,000
			6층 이상	174	184,175,327	257,754,673	441,930,000	22,096,000	44,193,000	44,193,000	44,193,000	44,193,000	44,193,000	44,193,000	44,193,000	110,483,000
84A	337	101동 1호, 4호 103동 1호, 4호 104동 1호, 4호 105동 1호, 4호 108동 1호, 4호 109동 1호, 4호 111동 1호, 4호	1층	14	214,593,110	220,556,890	435,150,000	21,757,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108,788,000
			2층	14	214,593,110	230,226,890	444,820,000	22,241,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111,205,000
			3층	14	214,593,110	239,896,890	454,490,000	22,724,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113,623,000
			4층	14	214,593,110	249,566,890	464,160,000	23,208,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116,040,000
			5층	14	214,593,110	259,236,890	473,830,000	23,691,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118,458,000
			6층 이상	267	214,593,110	268,906,890	483,500,000	24,175,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120,875,000
84B	337	101동 2호, 3호 103동 2호, 3호 104동 2호, 3호 105동 2호, 3호 108동 2호, 3호 109동 2호, 3호 111동 2호, 3호	1층	14	214,558,346	220,591,654	435,150,000	21,757,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43,515,000	108,788,000
			2층	14	214,558,346	230,261,654	444,820,000	22,241,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44,482,000	111,205,000
			3층	14	214,558,346	239,931,654	454,490,000	22,724,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45,449,000	113,623,000
			4층	14	214,558,346	249,601,654	464,160,000	23,208,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46,416,000	116,040,000
			5층	14	214,558,346	259,271,654	473,830,000	23,691,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47,383,000	118,458,000
			6층 이상	267	214,558,346	268,941,654	483,500,000	24,175,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48,350,000	120,875,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고양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임. • 주택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 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주방가전 등]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서 선택사항임.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택지개발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증감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 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 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72A	72B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철거주택 소유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20	20	34	34	10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0	10	17	17	5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0	10	17	17	54
	소 계	20	20	34	34	108
신혼부부 특별공급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30%)	6	6	10	10	32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4	4	7	7	22
	수도권 거주자(50%)	10	10	17	17	54
	소 계	20	20	34	34	10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30%)	2	2	3	3	1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1	1	2	2	6
	수도권 거주자(50%)	3	3	5	5	16
	소 계	6	6	10	10	32
합 계		66	66	112	112	35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전 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 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 상 미성년자를 제외함)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 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특별공급별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 추천기관 예 ① 장애인 : 지자체(장애인 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복지정책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복지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중소기업청 ⑤ 이주대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⑥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⑦ 북한 이탈 주민 : 하나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추첨 대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천 받은 자 전체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 · 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 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 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고양시) 거주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다자녀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효 처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구 분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884,448원 이하	5,630,275원 이하	5,630,27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861,338원 이하	6,756,330원 이하	6,756,330원 이하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 · 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조정 대상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 또는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 가능)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 수원시 → 고양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고양시 → 인천광역시 → 고양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가점제 100%)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해당 주택은 일반 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고양시 / 경기도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 · 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고양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된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 · 초본[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또는 분리세대의 경우] ※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3년 이상 ~ 4년 미만	5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4년 이상 ~ 5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5년 이상 ~ 6년 미만	7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6년 이상 ~ 7년 미만	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7년 이상 ~ 8년 미만	9	15년 이상	17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고양시 1년 거주자 중 낙첨자는 경기도 청약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경기도 청약자(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중 낙첨자 포함) 중 낙첨자는 수도권 청약지역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 공급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단, 만65세 이상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세대의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예비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하고,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jichuk-fullever.co.kr)에 공개함.

Ⅳ.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당첨자 발표	신청 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고양시 / 경기도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17.09.13(수) 10:00 ~ 16:00	2017.09.14(목) 14:00	• 견본주택 방문 접수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2번지 한림 풀에버 견본주택(원흥역 인근)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O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O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www.apt2you.com)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타 서류로 접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 · 비속의 소득입증서류)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군 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 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하여 근로소득만 산정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고양시 / 경기도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2017.09.15.(금)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2순위		2017.09.18.(월)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 (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7.09.14(목) 14: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17.09.22(금) • 확인 :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 홈페이지(http://jichuk-fullever.co.kr)
일반공급	• 일시 : 2017.09.22(금)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수와 미계약 동 · 호수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되,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jichuk-fullever.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7.09.22 (금) ~ 2017.10.01 (일) (10일간)	
인터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조회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7.09.22 (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7.09.27 (수) ~ 2017.09.29 (금) 3일간, 10:00 ~ 16:00	고양 덕양구 원흥동 632번지 지축역 한림 풀에버 견본주택 : 원흥역 인근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 사항	비 고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 본인 확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O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O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O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일반공급		O	• 대리 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상기서류 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O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O	•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통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이로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해당 다른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자를 판명함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본 불가)
- 입주지정기간 중 실입주일(또는 잔금 연체자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한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하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입주 개시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하여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 소음 · 조망 · 일조 ·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환경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전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공동주택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232–0001–1835–00	한림건설 주식회사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에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실 계약자
- 중도금 대출은 관련 정책 법률의 변경, 부동산 정책(주택담보 대출의 제한 등),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대상자 등) 중도금 대출조건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향후 지정되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대출은행과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지지 아니함.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하고 입주(입주 잔금 정산 시) 전 납부된 이자를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하여야 함. 또한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별도 지정 통보하는 은행으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납부하는 경우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증 발급(잔금정산)시까지 해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예정일 : 2020.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 할인은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 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은 추후 별도 통보함.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Ⅶ. 발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10%) 2018. 03. 05	잔 금(80%) 입주 지정일
72 A	11,965,000	1,196,500	1,196,500	9,572,000
72 B	11,592,000	1,159,200	1,159,200	9,273,600
84 A	12,568,000	1,256,800	1,256,800	10,054,400
84 B	12,732,000	1,273,200	1,273,200	10,185,600

■ 발코니 확장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발코니 확장	232–0001–1837–00	한림건설 주식회사

- 발코니확장대금은 상기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 ·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유의 사항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될 수 없으며, 별도계약을 하여야 하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5.12.02. 개정 시행) • 견본주택은 상기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 및 시공되었으며, 별도품목 내역은 견본주택 및 안내문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으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위의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유리 등),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창호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단, 사용검사 및 잔금 납부이후 설치 가능)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 ·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설치위치	설치 대수	설치 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20%) 2018. 03. 05.	잔 금(70%) 입주지정일
72 A	거실 + 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1 + 3	4,100,000	410,000	820,000	2,8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1 + 4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72 B	거실 + 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1 + 3	4,100,000	410,000	820,000	2,8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1 + 4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84 A	거실 + 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2,94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 주방	1 + 5	6,300,000	630,000	1,260,000	4,410,000
84 B	거실 + 안방	1 + 2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거실 + 안방 + 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2,94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1 + 4	5,500,000	550,000	1,100,000	3,850,000
	거실 + 안방 + 침실2 + 침실1 + 주방	1 + 5	6,400,000	640,000	1,280,000	4,480,0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에어컨 설치 대금	232–0001–1839–01	한림건설 주식회사

- 에어컨 설치 대금은 상기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 ·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유의 사항
- 상기 실별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함.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공사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 후 계약 시 안내받은 제품이 단종될 경우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거실, 안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단위세대 유상 옵션(추가 선택 품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적용사항	위 치	금 액	세부 적용 내용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20%) 2018.03.05	잔 금(70%) 입주 지정일
72A	안방 붙박이장	안방	1,980,000	안방 붙박이장 설치	198,000	396,000	1,386,000
	양문형 냉장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520,000	1,040,000	3,640,000
72B	양문형 냉장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520,000	1,040,000	3,640,000
84A	안방 붙박이장	안방	2,310,000	안방 붙박이장 설치	231,000	462,000	1,617,000
	양문형 냉장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520,000	1,040,000	3,640,000
84B	양문형 냉장고	주방	5,2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520,000	1,040,000	3,640,000

■ 단위세대 유상 옵션 납부 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경남은행	유상 옵션 설치 대금	232–0001–1833–09	한림건설 주식회사

- 단위세대 유상 옵션 설치 대금은 상기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 ·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 · 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 · 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 닥 재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 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욕실 바닥난방+시멘트몰탈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 바닥 배수 슬라브
벽	랩핑지 마감, 발코니 벽 도장,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천 정	천정지(초배지포함),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반자돌림(몰딩포함), 인테리어 마감, 발코니 천장 도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발코니 내부 PL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일반)
욕 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장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 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일체(가스쿡탑, 주방액정TV, 렌지후드 등), 가전기기 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및 주방 배기 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반침장	
조명기구	부착, 매립, 거치형 조명기구(간접조명 포함), 욕실 매입 등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등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72A	72B	84A	84A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2,212,000	22,147,000	25,567,000	25,602,000
※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은 타입별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시공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일정,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공사,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Ⅷ. 기타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 지역을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 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귀속하며,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소송 시 관할법원은 당사가 결정하는 법원으로 결정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당사가 직접 계약하는 건 이외에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 확장 시공, 시스템 에어컨,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이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 태업 및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건축허가(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 이므로 견본주택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단지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주거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하여 사용이 불가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당시 실시 설계 후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어)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함.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계약자는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의 없이 동의함. • 평형 및 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 ·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부대복리시설(근생 포함)의 실외기 및 D/A가 일부 세대 부근에 설치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미술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 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건축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면, 입면(전 · 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으며, 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었으며,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 경계 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품질점검을 위해 샘플하우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을 준수하여 계획함에 따라 층간 소음 ·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벽, 천정 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벽지, 바닥재, 타일 등)가 미 시공 됨.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임.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및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급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초 · 중학생은 지구 내 신설 초 · 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양시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 학교용지 위치변경에 대한 협의 중으로 학교부지 수, 학교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신설 초 · 중학교의 학교 설립 확정 여부 및 개교시기는 학교 설립심의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부 투자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구의 초 · 중학생은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 유보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지 않으며, 당해 지구의 고등학생은 고양시 기존 학교에 배정될 예정임. • 신설 예정 초 · 중학교의 학교 설립 지연 또는 취소 시 입주세대 초 · 중학생은 인근 학교에 배치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으로부터 인근 학교까지의 통학거리 및 통학환경은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경사도)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위치한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는 PD 등의 점검을 위하여 세대 내에 점검구가 설치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형별로 전면 혹은 후면 발코니(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며, 그로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최상층 세대는 관계법령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나 기준층 세대 대비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계획이 계획, 추진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 및 입주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종 광고 및 홍보 유인물은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는 상기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 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 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Ⅸ. 단지 여건사항

■ 택지개발지구 여건 및 단지 외부여건
※ 다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시 ·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 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율,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당사 부지와 접해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있어 이로 인한 공사 등으로 분진, 먼지, 소음 및 공사자재 수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필지 세부내역, 공공계획 평면도, 건축물 등에 관한 도면, 지구단위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포함) 내용 및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단에 직접 내방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변경 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 · 주차장 · 학교 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 · 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립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학생 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은 사업부지 이외의 구간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자가 숙지하여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교량, 지하차도, 종교시설,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설비(지역난방), 지축차량기지, 환경처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후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은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의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취소 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므로 그 진행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 지구를 지나가는 고압송전철탑(154kv 5기)은 철거 후 지중화 예정으로 이로 인한 지구경계부에 전기공급시설(2곳, C/H)이 설치될 계획이며,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 지구 동측에 위치한 군부대의 훈련(영내 사격장) 및 병영생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용이 불가하고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고양 지축 공공주택 지구 내 · 외에 군부대와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군진지 등의 군사시설의 설치 및 공동주택 옥상에 관측소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하여 제거, 이전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 고양 지축 공공주택 지구 남측 경계에 수도권 전철3호선 지축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으며, 지구밖 남서측 창릉천변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고양삼송지구, 운영중) 및 폐기물처리시설(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계획)이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음 • 건축허가상의 조건 및 협의에 따라 당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 예정임.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구단위변경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다음과 설계와 관련된 내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명칭, 동표시, 동번호, 그래픽, 조경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 또는 협의자문에 따라 입주 시점에 최초 사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리사무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내부시설은 설치가 의무된 품목만 시공하며, 그 외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의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차량 진출입 동선은 단지 출입구 부분의 아파트 차량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함. •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건축물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장소의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TOP LIGHT,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저층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에 따른 승강기 기계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일체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및 야외 캠핑장(111동 앞) 등의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견본주택 모형 위치 확인 요함)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 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소의 위치에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소방 비상차 구획에 활용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지상 노출될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 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와 옹벽 사이의 거리를 위하여 작성 전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모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 특성 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 주변 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구간에 대지 단차에 의한 옹벽이 설치됨으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 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 세대는 일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입주자 주차장은 지하층, 지하2층, 지하3층에 설치되어 있으나 동선 거리,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 단지 내 주차장은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전체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 출입구 개소,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지반 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 및 일조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 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데크 형태 및 입면옹벽, 주차장 입구, 커뮤니티 및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시설의 형태, 내부구조, 가구 및 집기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주차장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에 따라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제한 등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발생에 따라 시설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 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 · 복리 시설은 실 시공 시 변경(준공도면에 반영됨) 될 수 있으며, 인 · 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소음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 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동 출입구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변경 등 관계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함. • 분양 이후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기본형, 확장형 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의 협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음.

Ⅹ. 설계관련 주요 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단위세대 평면 설계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으므로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 상의 기본형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에어컨 및 가구옵션을 적용한 확장형으로 되어있으며, 기본형 선택 시 홍보물 상의 평면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신발장,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측면 및 후면에는 도배지 마루판 등의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아니함.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일부 동의 경우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트 홀 설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분양카달로그 및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트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 세대의 경우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 및 발코니 난간대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하며, 시공사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 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 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배관,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자재 자체의 특성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기된 내용에만 한정함.
- 각 세대의 침실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실 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석공사 사용자재는 마감재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세대 내 온수 분배기의 위치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 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안방 발코니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음.(타입별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위치는 다를 수 있으며 72A 및 84A TYPE의 경우 실외기실은 주방 발코니 부분에 위치)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선택사양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청소용 급수전,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우물천장의 형태, 깊이 등은 소화배관 및 환기덕트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날개벽체 등의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마감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주방 싱크대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가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됨.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실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의 형상이나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설치되는 드레스 룸에는 채광용 창이 설치되며, 창호의 사이즈는 변경이 불가하며, 창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로 등은 개인의 생활환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창호 형태, 크기, 색상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 확장 시 하부 세대 천정 부위의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천장 높이, 커텐박스 깊이, 등 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음. • 한림풀에버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환기난방제어 등)와 IoT 연동 제품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해야 함. • 거실에 설치되는 IoT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기 제어는 세대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및 서비스 비용은 입주자 부담이고,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제어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 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 용 소방시설로 실시공시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식탁,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추가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마이너스 옵션, 공간 옵션)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 내 사용공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 사실,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 형, 안방은 벽걸이 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 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고지사항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목,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 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시공 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 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커뮤니티 시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 GX ROOM, 골프연습장, 독서실, 동호인실, 도서관, 주민카페, 사우나,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 하우스, 캠핑장 등

▣ 입주자 사전방문 확인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기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일자를 정하여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다른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외 각종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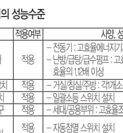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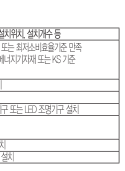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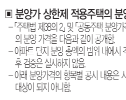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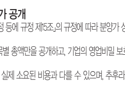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 전동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 난방/급탕/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KS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거실/침실/주방 : 각개소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세대/공용부위 :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수전류 :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금 액(원, VAT포함)
건 축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273,979,400
전 기	㈜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600,300,000
통신 · 소방	㈜한국나이스이엔지	253,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38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택지 공급가격	204,411,131,400	공사비	토 목	9,424,530,000
	기간이자	3,855,105,811		건 축	88,785,433,000
	그밖의 비용	15,184,843,417		기계설비	15,245,980,000
간접비	설계비	2,082,087,000		그밖의 공종	24,489,110,000
	감리비	3,127,279,400		그밖의 공사비	16,183,498,000
	부대비	80,692,455,818	그밖의 비용	그밖의 비용	46,004,566,154
합 계		509,486,02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 증 기 간
제02412017–101–0001000호	382,114,362,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보증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 의해 정한 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1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고양 지축 한림 풀에버 (고양 지축 공공주택지구 B2블록)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 호	한림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0(상남동, KB증권 빌딩 5층)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90111–0012051

▣ 견본주택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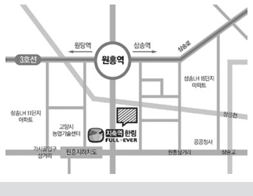

▣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동 원흥동 632 지축역 한림 풀에버 견본주택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jichuk-fullever.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타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02) **591–1100**

시행 · 시공 | 한림건설